



선 람	기관의 장

제 952 호

2010년 12월 2일 목요일

공 고

○ 공고 제2010- 1532호 2011년 동계 부업대학생 모집 공고	2
○ 공고 제2010- 153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운동경기부 운영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4
○ 공고 제2010- 1536호 대부업자 영업정지 처분 공고	19
○ 공고 제2010- 1540호 2010년 11월 수시분 취·등록세 고지서	20
○ 공고 제2010- 1541호 향촌구역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 입안을 위한 공람 공고	22

회 람								
----------------	--	--	--	--	--	--	--	--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10-1532호

2011년 동계 부업대학생 모집 공고

남동구청에서는 대학생에게 사회 경험 및 행정체험을 하는 한편 올바른 근로 및 봉사를 통한 자립정신을 배양시키고자 다음과 같이 2011년 동계 부업대학생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 모집기간 : 2010. 12. 13 ~ 12. 17 (5일간)
- 접 수 처 :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
- 근무기간 : 2011. 1. 3 ~ 2. 9 / 09:00 ~ 18:00 (25일간, 주5일 근무)
- 모집인원 : 50명 이내
- 보 수 : 875,000원 (1일 35,000원) - 교통비,식비포함
- 근무내용 : 현장근무 및 행정업무 지원
- 자격요건

공고일(2010.12.01) 현재 남동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내대학(교) 재학생으로 최근 2년간(2009년 동계 ~ 2010년 하계) 우리구에서 부업대학생으로 근무한 경험이 없는 학생

※ 제외사항 :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방학의 개념이 없는 대학 제외, 휴학생 및 유학생(해외대학) 제외

○ 선발방법

- 모집인원 이내 접수시 적격자 중 전원 선발
- 모집인원 초과 접수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모·부자 가정 자녀를 우선 선발(※30% 이내) 후 나머지 학생은 전산추첨에 의해 선발
- ※ 신청서 기재사항 중 거주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모·부자가정 자녀 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신청에서 제외

○ 추첨일시 및 장소

- 추첨일시 : 2010. 12. 21(화) 10:00
- 추첨방법 : 추첨프로그램에 의한 전산추첨 (희망시 참관 가능)

- 최종선발자 공고 : 2010. 12.21(화) 오후/남동구 홈페이지 새소식란
- 선발자 서류제출 : 재학증명서 1부 제출
 - 제출기한 : 2010. 12. 22 ~ 12. 24 (3일간) 09:00 ~ 18:00
 - 제 출 처 : 남동구청 총무과 자치행정팀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 <※ 최종선발자는 근거리 배치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남동구 총무과(☎ 453-2230)로 문의바랍니다.

2010. 12. 1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10-153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운동경기부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운동경기부 운영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사무처리규칙」 제11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1. 30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운동경기부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정이유

- 전국체육대회 3관왕 우수선수에 대한 사기양양을 위한 운동수당 조정
- 향후 경기력 향상 동기부여를 위한 입상보상금 상향 조정
- 현행 규칙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3. 주요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운동경기부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0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문화홍보실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팩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소재로 633

☎ : 032)453-2150, FAX : 032)453-2139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운동경기부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제안이유

- 전국체육대회 3관왕 우수선수에 대한 사기양양을 위한 운동수당 조정
- 향후 경기력 향상 동기부여를 위한 입상보상금 상향 조정
- 현행 규칙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주요내용

- 운동경기부 봉급표 조정 (안 별표 1)
- 특별승급 기준 삭제 (안 별표 3)
- 운동수당 지급구분 조정 (안 별표 4)
- 목욕비, 간식비, 업무추진교통비 지급기준 조정 (안 별표 5)
- 입상보상금 지급구분 조정 (안 별표 7)
- 성과금지급 점수산정기준 조정 (안 별표 8)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남동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운동경기부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운동경기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제1항”을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로 하고

제2조의 운동경기부 단장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구청장”으로 한다.

제3조의 제1항 중 “구청장은”을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3조의2 중 2. 합숙소근무자(조리사) 정년을 “57세”에서 “60세”로 한다.

제3조의3을 “제3조의3(감독등의 임면) 감독·코치 및 선수, 합숙소 근무자(조리사)의 임용 및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 중 제1호를 제외한 사유에 해당되어 면직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조례에 따라 구성된 남동구 체육진흥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한다.

제10조 중 ③ “감독·코치 및 선수의 사기양양을 위하여 각종대회에서 입상하여 운동경기부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에는 정기승급일에 “별표3”과 같이 특별승급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특별승급은 연간 1회에 한한다.”는 삭제하고 ④를 ③으로 한다.

제11조 중 ③ 운동수당 지급을 위한 감독·코치 및 선수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를 “같으며 전년도 1년의 성적을 종합하여 재확정 한다.”로 하고

1. 특급 “전년도 또는 현년도 국가대표 선수이거나 국가대표 상비군인 자, 전국규모 대회 2회 이상 우승 또는 2관왕 이상인 자, 아시아선수권대회 이상의 국제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 자, 전국체육대회 1위에 입상한 자.”를 “국가대표 선수이거나 국가대표 상비군인 자, 아시아선수권대회 이상의 국제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 자, 전국체육대회 3관왕이상 입상한 자.”로 하고
2. 1급 “전년도 또는 현년도 전국규모대회에서 1위에 입상하거나, 2회 이상 2위에 입상한 자, 전국체육대회 2위에 입상한 자.”를 “전국규모대회 2회 이상 우승 또는 2관왕 이상인 자, 전국체육대회 1위에 입상한 자.”로 하며
3. 2급 “전년도 또는 현년도 전국규모대회에서 2위에 입상하거나 2회 이상 3위에 입상한 자, 전국체육대회 3위에 입상한 자.”를 “전국규모대회에서 1위에 입상하거나, 2회 이상 2위에 입상한 자, 전국체육대회 2위에 입상한 자.”로 하고

4. 3급 “향후 전국체육대회에서 입상 가능한 자질을 갖춘 자” 를 “전국규모대회에서 2위에 입상하거나 2회 이상 3위에 입상한 자, 전국체육대회 3위에 입상한 자.” 로 하며 5호는 신설하여 “4급 : 향후 전국체육대회에서 입상 가능한 자질을 갖춘 자” 로 한다.

제11조 중 ④ 신규임용자의 운동수당 지급을 위한 선수등급은 임용전 1년 성적을 기준으로 책정 “하며” 를 “한다” 로 하고, “2급 이상의 선수가 1년간 당해 등급이상의 성적을 거두지 못하는 때에는 하위등급으로 한등급 하향 조정한다.” 는 삭제하고 “ 단, 올림픽 입상자는 4년간, 세계선수권대회 1위 입상자는 2년간 그 등급을 유지한다.” 는 “ 단, 올림픽입상자는 4년간, 세계선수권대회 1위 및 전국체육대회 3관왕이상 입상자는 2년간 그 등급을 유지한다.” 로 한다.

제13조 ① 감독·코치 및 선수가 “각종” 을 “별표8에서 정하는” 으로 하고

- ② 감독·코치 및 선수가 “각종” 을 “별표8에서 정하는” 으로 하고, “다만, 감독·코치의 각종대회 입상보상금은 선수의 최고성적 1개만 지급한다.” 는 “다만, 감독·코치의 각종대회 입상보상금은 종목별 선수의 최고성적 1개만 적용하여 지급한다.” 로 하고

④의 단서 “다만, 감독·코치의 성과금 지급점수는 해당부 선수의 가장 높은 성과금 지급점수로 한다.” 를 “다만, 감독·코치의 성과금 지급점수는 해당부 선수의 가장 높은 성과금 지급점수로 하되 제6조 규정에 의한 면직된 선수가 있을 경우에는 성과금 지급점수에서 10%를 감할 수 있다.” 로 한다.

⑥의 단서 “다만, 동일대회에서 2개 이상 입상한 경우에는 최고 입상성적에 대한 보상금을 100퍼센트, 나머지 분야에 대하여는 50퍼센트를 지급하고, 전국체육대회 및 아시아선수권대회 이상의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각 분야별 입상 횟수에 상관 없이 보상금을 지급하고, 전국체육대회는 그 보상금액의 100퍼센트, 국제대회는 그 보상금액의 20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며, 입상부분과 기록갱신부분, 특별보상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는 삭제한다.

“⑦ 입상부분과 기록갱신부분, 특별보상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를 신설한다.

별표1, 별표4, 별표5, 별표7, 별표8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3은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감독, 선수 및 합숙소근무자(조리사) 봉급 지급 기준

○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봉급표를 기준으로 아래기준에 의거 봉급액 산정

구 분	봉급지급액 산정 방식
감독	일반직 5급 공무원의 호봉별 봉급지급액
코치	일반직 6급 공무원의 호봉별 봉급지급액
선수	일반직 7급 공무원의 호봉별 봉급지급액
합숙소관리자 (조리사)	기능10급 공무원의 호봉별 지급액

○ 매년 1월 1일 당해 연도 공무원보수지급액에 따라 결정

[별표3] -----> 삭제

특별승급 기준

구 분	해 당 성 적	승급호봉
감독·코치 및 선수	· 올림픽대회 3위 이내, 세계선수권대회 1위 입상 · 아시아선수권대회 이상 국제대회 3위 이내 입상 · 전국체육대회 1위 입상, 단체전 1위 입상 · 임용 후 국가대표 선발	1호봉

[별표4]

운동수당 지급구분

구 분		운 동 수 당
감 독		매월 250,000원
코 치		매월 220,000원
선 수	특급	매월 2,000,000원
	1급	매월 1,000,000원
	2급	매월 500,000원
	3급	매월 300,000원
	4급	매월 80,000원

[별표 5]

목욕비, 간식비, 업무추진교통비 지급기준

구 분	목 욱 비	간 식 비	업무추진 교통비
감독·코치	50,000원	50,000원	100,000원
선 수	50,000원	50,000원	50,000원
합숙소관리자(조리사)		50,000원	50,000원

[별표7]

입상보상금 지급구분

구 분			지 급 기 준				비 고		
입 상			종 목 별		지 급 액				
					1위	2위	3위		
			감독		250,000	150,000	100,000		
			코 치		200,000	100,000	70,000		
			선 수	전국규모	개 인	300,000	200,000		100,000
					계 주	명×200,000	명×150,000		명×70,000
				전국체전	개 인	500,000	300,000		200,000
					계 주	명×300,000	명×200,000		명×100,000
				아시아규모		1,000,000	700,000		500,000
세계규모		3,000,000		2,000,000	1,000,000				
			기 록 구 분				지 급 액		
특 별 보상금			감독 코치	· 소속 선수의 올림픽대회 3위 이내 · 소속 선수의 세계선수권대회 1위			5,000,000		
			선 수	· 올림픽대회 3위 이내 · 세계선수권대회 1위 · 전국체육대회 3관왕 이상			10,000,000		
				· 전국체육대회 2관왕 이상 · 아시아선수권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 1위			6,000,000		
기 록 갱 신 선 수			대회신기록 (타이기록)		전국체육대회		500,000		
					전국규모대회		300,000		
			한국신기록(타이기록)						800,000
			세계신기록(타이기록)						1,500,000

〔별표8〕

성과금지금 점수산정기준

구 분	1 위	2 위	3 위	비고
올 림 픽 게 임	1000점	600점	400점	
세 계 선 수 권 대 회	600점	400점	300점	
아 시 안 게 임	400점	300점	200점	
아시아선수권대회	300점	200점	120점	
전 국 체 육 대 회	200점	120점	80점	
전 국 규 모 대 회	15점	10점	6점	

비고 : 전국규모대회는 다음과 같다.

구 분	해 당 전 국 규 모 대 회 명 칭
육 상	①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②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③ 전국실업단대항육상경기대회 ④ 전국실업육상경기선수권대회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운동경기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 -----
제2조(설치 및 구성)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운동경기부(이하 “운동경기부”라 한다)의 설치종목은 육상부로 하고 단장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총원은 9명으로 한다. 이 경우, 육상부의 구성은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6명, 합숙근무자(조리사) 1명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구성)----- ----- ----- 남동구 부청장이 되며, 총원은 9명으로 한다. ----- ----- -----
제3조(임용)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감독 및 코치(이하 '감독·코치'라 한다)를 구청장이 추천한 자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가맹경기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임용한다. ②~⑧ 생략	제3조(임용)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 ----- ----- ②~⑧ 생략
제3조의2(정년) 생략 1. 생략 2. 합숙소근무자(조리사) : 57세 3. 생략	제3조의2(정년) 생략 1. 생략 2. 합숙소근무자(조리사) : 60세 3. 생략
제3조의3(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남동구 운동경기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구성·운영 할 수 있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의3(감독 등의 임면) 감독·코치 및 선수, 합숙소 근무자(조리사)의 임용 및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 중 제1호를 제외한 사유에 해당되어 면직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남동구 체육진흥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및 문화홍보실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체육관련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3.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업무관련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실무자가 된다. 5. 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감독·코치 및 선수, 합숙소근무자(조리사)의 신규임용, 재임용, 등급 조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코치 및 선수, 합숙소근무자(조리사)의 면직에 관한 사항 중 제1호를 제외한 사유에 해당되어 직권면직 하는 사항 3. 기타 구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호봉획정) ①~② 생략 ③ 감독·코치 및 선수의 사기양양을 위하여 각종대회에서 입상하여 운동경기부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에는 정기승급일에 "별표 3" 과 같이 특별승급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특별승급은 연간 1회에 한한다. ④ 생략	제10조(호봉획정) ①~② 생략 ③ 삭제 ③ 생략
제11조 ①~② 생략 ③ 운동수당 지급을 위한 감독·코치 및 선수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급 : 전년도 또는 현년도 국가대표 선수이거나 국가대표 상비군인 자, 전국규모대회 2회 이상 우승 또는 2관왕 이상인 자, 아시아선수권대회 이상의 국제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 자, 전국체육대회 1위에 입상한 자.	제11조 ①~② 생략 ③ ----- -----<u>같으며 전년도 1년의</u> <u>성적을 종합하여 재획정 한다.</u> 1. 특급 : 국가대표 선수이거나 국가대표 상비군인 자, 아시아선수권대회 이상의 국제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 자, 전국체육대회 1위로 3관왕이상 입상한 자.

현 행	개 정 안
2. 1급 : 전년도 또는 현년도 전국규모대회에서 1위에 입상하거나, 2회 이상 2위에 입상한 자, 전국체육대회 2위에 입상한 자.	2. 1급 : 전국규모대회 2회 이상 우승 또는 2관왕 이상인 자, 전국체육대회 1위에 입상한 자.
3. 2급 : 전년도 또는 현년도 전국규모대회에서 2위에 입상하거나 2회 이상 3위에 입상한 자, 전국체육대회 3위에 입상한 자.	3. 2급 : 전국규모대회에서 1위에 입상하거나, 2회 이상 2위에 입상한 자, 전국체육대회 2위에 입상한 자.
4. 3급 : 향후 전국체육대회에서 입상 가능한 자질을 갖춘 자	4. 3급 : 전국규모대회에서 2위에 입상하거나 2회 이상 3위에 입상한 자, 전국체육대회 3위에 입상한 자.
④ 신규임용자의 운동수당 지급을 위한 선수등급은 임용전 1년 성적을 기준으로 책정하며, 2급 이상의 선수가 1년간 당해 등급 이상의 성적을 거두지 못하는 때에는 하위 등급으로 한등급 하향 조정한다. 단, 올림픽 입상자는 4년간, 세계선수권대회 1위 입상자는 2년간 그 등급을 유지한다.	5. 4급 : 향후 전국체육대회에서 입상가능한 자질을 갖춘 자(신설) ④신규임용자의 운동수당 지급을 위한 선수등급은 임용전 1년 성적을 기준으로 책정한다. 단, 올림픽입상자는 4년간, 세계선수권대회 1위 및 전국체육대회 3관왕이상 입상자는 2년간 그 등급을 유지한다.
제13조(보상금) ① 감독·코치 및 선수가 각종 대회에 출전할 때에는 선전을 통하여 상위에 입상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전 장려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액은 별표 6과 같다.	제13조(보상금) ① ----- 별표8에서 정하는 ----- -----
② 감독·코치 및 선수가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경우에는 지속적인 경기력 향상과 사기양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상보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감독·코치의 각종대회 입상보상금은 선수의 최고성적 1개만 지급한다.	② -----별표8에서 정하는 ----- ----- ----- 다만, 감독·코치의 각종대회 입상보상금은 종목별 선수의 최고성적 1개만 적용하여 지급한다.
③생략	③생략
④의 단서 다만, 감독·코치의 성과금 지급점수는 해당부 선수의 가장 높은 성과금 지급점수로 한다.	④다만, 감독·코치의 성과금 지급점수는 해당부 선수의 가장 높은 성과금 지급점수로 하되 제6조 규정에 의한 면직된 선수가 있을 경우에는 성과금 지급점수에서 10%를 감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⑤생략 ⑥생략 <u>다만, 동일대회에서 2개 이상 입상한 경우에는 최고 입상성적에 대한 보상금을 100퍼센트, 나머지 분야에 대하여는 50퍼센트를 지급하고, 전국체육대회 및 아시아선수권대회 이상의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각 분야별 입상 횟수에 상관없이 보상금을 지급하고, 전국체육대회는 그 보상금액의 100퍼센트, 국제대회는 그 보상금액의 20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며, 입상부분과 기록갱신부분, 특별보상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보상금을 지급한다.</u>	⑤생략 ⑥생략 단서 삭제 ⑦ 입상부분과 기록갱신부분, 특별보상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보상금을 지급한다.(신설)

개정사항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 감독, 선수 및 합숙소근무자(조리사) 봉급 지급 기준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과 별표 8을 준용하여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봉급표를 기준으로 아래기준에 의거 봉급액 산정 <table><tr><th>구분</th><th>봉급지급액 산정 방식</th></tr><tr><td>감독</td><td>일반직 5급 공무원의 호봉별 봉급지급액 단, 최고 상한호봉은 20호봉으로 한다.</td></tr><tr><td>코치</td><td>일반직 6급 공무원의 호봉별 봉급지급액 단, 최고 상한호봉은 18호봉으로 한다.</td></tr><tr><td>선수</td><td>일반직 7급 공무원의 호봉별 봉급지급액 단, 최고 상한호봉은 15호봉으로 한다.</td></tr><tr><td>합숙소 관리자(조리사)</td><td>기능10급 공무원의 호봉별 지급액 단, 최고 상한호봉은 20호봉으로 한다.</td></tr></table> ○ 매년1월1일 당해 연도 공무원보수지급액에 따라 결정	구분	봉급지급액 산정 방식	감독	일반직 5급 공무원의 호봉별 봉급지급액 단, 최고 상한호봉은 20호봉으로 한다.	코치	일반직 6급 공무원의 호봉별 봉급지급액 단, 최고 상한호봉은 18호봉으로 한다.	선수	일반직 7급 공무원의 호봉별 봉급지급액 단, 최고 상한호봉은 15호봉으로 한다.	합숙소 관리자(조리사)	기능10급 공무원의 호봉별 지급액 단, 최고 상한호봉은 20호봉으로 한다.	[별표 1] 감독, 선수 및 합숙소근무자(조리사) 봉급 지급 기준 ○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봉급표를 기준으로 아래기준에 의거 봉급액 산정 <table><tr><th>구분</th><th>봉급지급액 산정 방식</th></tr><tr><td>감독</td><td>일반직 5급 공무원의 호봉별 봉급지급액</td></tr><tr><td>코치</td><td>일반직 6급 공무원의 호봉별 봉급지급액</td></tr><tr><td>선수</td><td>일반직 7급 공무원의 호봉별 봉급지급액</td></tr><tr><td>합숙소 관리자(조리사)</td><td>기능10급 공무원의 호봉별 지급액</td></tr></table> ○ 매년1월1일 당해 연도 공무원보수지급액에 따라 결정	구분	봉급지급액 산정 방식	감독	일반직 5급 공무원의 호봉별 봉급지급액	코치	일반직 6급 공무원의 호봉별 봉급지급액	선수	일반직 7급 공무원의 호봉별 봉급지급액	합숙소 관리자(조리사)	기능10급 공무원의 호봉별 지급액																		
구분	봉급지급액 산정 방식																																						
감독	일반직 5급 공무원의 호봉별 봉급지급액 단, 최고 상한호봉은 20호봉으로 한다.																																						
코치	일반직 6급 공무원의 호봉별 봉급지급액 단, 최고 상한호봉은 18호봉으로 한다.																																						
선수	일반직 7급 공무원의 호봉별 봉급지급액 단, 최고 상한호봉은 15호봉으로 한다.																																						
합숙소 관리자(조리사)	기능10급 공무원의 호봉별 지급액 단, 최고 상한호봉은 20호봉으로 한다.																																						
구분	봉급지급액 산정 방식																																						
감독	일반직 5급 공무원의 호봉별 봉급지급액																																						
코치	일반직 6급 공무원의 호봉별 봉급지급액																																						
선수	일반직 7급 공무원의 호봉별 봉급지급액																																						
합숙소 관리자(조리사)	기능10급 공무원의 호봉별 지급액																																						
[별표3] 특별승급 기준 <table><tr><th>구분</th><th>해당성적</th><th>승급호봉</th></tr><tr><td>감독 · 코치 및 선수</td><td>· 올림픽대회 3위 이내, 세계선수권대회 1위 입상 · 아시아선수권대회 이상 국제대회 3위 이내 입상 · 전국체육대회 1위 입상, 단체전 1위 입상 · 임용 후 국가대표 선발</td><td>1호봉</td></tr></table>	구분	해당성적	승급호봉	감독 · 코치 및 선수	· 올림픽대회 3위 이내, 세계선수권대회 1위 입상 · 아시아선수권대회 이상 국제대회 3위 이내 입상 · 전국체육대회 1위 입상, 단체전 1위 입상 · 임용 후 국가대표 선발	1호봉	[별표3] 삭제																																
구분	해당성적	승급호봉																																					
감독 · 코치 및 선수	· 올림픽대회 3위 이내, 세계선수권대회 1위 입상 · 아시아선수권대회 이상 국제대회 3위 이내 입상 · 전국체육대회 1위 입상, 단체전 1위 입상 · 임용 후 국가대표 선발	1호봉																																					
[별표4] 운동수당 지급구분 <table><tr><th colspan="2">구분</th><th>운동수당</th></tr><tr><td colspan="2">감독</td><td>매월 250,000원</td></tr><tr><td colspan="2">코치</td><td>매월 220,000원</td></tr><tr><td rowspan="4">선수</td><td>특급</td><td>매월 1,000,000원</td></tr><tr><td>1급</td><td>매월 500,000원</td></tr><tr><td>2급</td><td>매월 300,000원</td></tr><tr><td>3급</td><td>매월 80,000원</td></tr></table>	구분		운동수당	감독		매월 250,000원	코치		매월 220,000원	선수	특급	매월 1,000,000원	1급	매월 500,000원	2급	매월 300,000원	3급	매월 80,000원	[별표4] 운동수당 지급구분 <table><tr><th colspan="2">구분</th><th>운동수당</th></tr><tr><td colspan="2">감독</td><td>매월 250,000원</td></tr><tr><td colspan="2">코치</td><td>매월 220,000원</td></tr><tr><td rowspan="5">선수</td><td>특급</td><td>매월 2,000,000원</td></tr><tr><td>1급</td><td>매월 1,000,000원</td></tr><tr><td>2급</td><td>매월 500,000원</td></tr><tr><td>3급</td><td>매월 300,000원</td></tr><tr><td>4급</td><td>매월 80,000원</td></tr></table>	구분		운동수당	감독		매월 250,000원	코치		매월 220,000원	선수	특급	매월 2,000,000원	1급	매월 1,000,000원	2급	매월 500,000원	3급	매월 300,000원	4급	매월 80,000원
구분		운동수당																																					
감독		매월 250,000원																																					
코치		매월 220,000원																																					
선수	특급	매월 1,000,000원																																					
	1급	매월 500,000원																																					
	2급	매월 300,000원																																					
	3급	매월 80,000원																																					
구분		운동수당																																					
감독		매월 250,000원																																					
코치		매월 220,000원																																					
선수	특급	매월 2,000,000원																																					
	1급	매월 1,000,000원																																					
	2급	매월 500,000원																																					
	3급	매월 300,000원																																					
	4급	매월 80,000원																																					

현행				개정안							
[별표 5]				[별표 5]							
목욕비, 간식비, 업무추진교통비 지급기준				목욕비, 간식비, 업무추진교통비 지급기준							
구분		목욕비	간식비	업무추진 교통비		업무추진 교통비					
감독·코치		50,000원	50,000원	100,000원		100,000원					
선수		50,000원	50,000원	50,000원		50,000원					
속(소관)자				50,000원		50,000원					
[별표7]				[별표7]							
입상보상금 지급구분				입상보상금 지급구분							
구분		지급기준			구분		지급기준				
입상		종목별		지급액		종목별		지급액			
				1위	2위			3위	1위	2위	3위
		감독		250,000	150,000	100,000	감독		250,000	150,000	100,000
		코치		200,000	100,000	70,000	코치		200,000	100,000	70,000
		선수	전국 개인	300,000	200,000	100,000	선수	전국 개인	300,000	200,000	100,000
			규모 계주	명×200,000	명×150,000	명×70,000		규모 계주	명×200,000	명×150,000	명×70,000
			전국 개인	500,000	300,000	200,000		전국 개인	500,000	300,000	200,000
			체전 계주	명×300,000	명×200,000	명×100,000		체전 계주	명×300,000	명×200,000	명×100,000
			아시아규모	1,000,000	700,000	500,000		아시아규모	1,000,000	700,000	500,000
			세계규모	3,000,000	2,000,000	1,000,000		세계규모	3,000,000	2,000,000	1,000,000
기록구분		지급액		기록구분		지급액					
특별보상금	감독·코치	· 소속 선수의 올림픽대회 3위 이내 · 소속 선수의 세계선수권대회 1위		5,000,000	특별보상금	감독·코치	· 소속 선수의 올림픽대회 3위 이내 · 소속 선수의 세계선수권대회 1위		5,000,000		
	선수	· 올림픽대회 3위 이내 · 세계선수권대회 1위		5,000,000		선수	· 올림픽대회 3위 이내 · 세계선수권대회 1위 · 전국체육대회 3관왕이상		10,000,000		
		· 전국체육대회 2관왕 이상 · 아시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1위		3,000,000			· 전국체육대회 2관왕이상 · 아시아선수권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 1위		6,000,000		
기록갱신선수	대회신기록		전국체육대회		500,000	기록갱신선수	대회신기록		전국체육대회		500,000
	(타이기록)		전국규모대회		300,000		(타이기록)		전국규모대회		300,000
	한국신기록(타이기록)				800,000		한국신기록(타이기록)				800,000
	세계신기록(타이기록)				1,500,000		세계신기록(타이기록)				1,500,000

현행					개정안																																																																
[별표8]					[별표8]																																																																
성과금지급 점수산정기준					성과금지급 점수산정기준																																																																
<table><tr><th>구분</th><th>1위</th><th>2위</th><th>3위</th><th>비고</th></tr><tr><td>올림픽게임</td><td>1000점</td><td>600점</td><td>400점</td><td rowspan="6"></td></tr><tr><td>세계선수권대회</td><td>600점</td><td>400점</td><td>300점</td></tr><tr><td>아시안게임</td><td>400점</td><td>300점</td><td>200점</td></tr><tr><td>아시아선수권대회</td><td>300점</td><td>200점</td><td>120점</td></tr><tr><td>전국체육대회</td><td>200점</td><td>120점</td><td>80점</td></tr><tr><td>전국규모대회</td><td>15점</td><td>10점</td><td>6점</td></tr></table>					구분	1위	2위	3위	비고	올림픽게임	1000점	600점	400점		세계선수권대회	600점	400점	300점	아시안게임	400점	300점	200점	아시아선수권대회	300점	200점	120점	전국체육대회	200점	120점	80점	전국규모대회	15점	10점	6점	<table><tr><th>구분</th><th>1위</th><th>2위</th><th>3위</th><th>비고</th></tr><tr><td>올림픽게임</td><td>1000점</td><td>600점</td><td>400점</td><td rowspan="6"></td></tr><tr><td>세계선수권대회</td><td>600점</td><td>400점</td><td>300점</td></tr><tr><td>아시안게임</td><td>400점</td><td>300점</td><td>200점</td></tr><tr><td>아시아선수권대회</td><td>300점</td><td>200점</td><td>120점</td></tr><tr><td>전국체육대회</td><td>200점</td><td>120점</td><td>80점</td></tr><tr><td>전국규모대회</td><td>15점</td><td>10점</td><td>6점</td></tr></table>					구분	1위	2위	3위	비고	올림픽게임	1000점	600점	400점		세계선수권대회	600점	400점	300점	아시안게임	400점	300점	200점	아시아선수권대회	300점	200점	120점	전국체육대회	200점	120점	80점	전국규모대회	15점	10점	6점
구분	1위	2위	3위	비고																																																																	
올림픽게임	1000점	600점	400점																																																																		
세계선수권대회	600점	400점	300점																																																																		
아시안게임	400점	300점	200점																																																																		
아시아선수권대회	300점	200점	120점																																																																		
전국체육대회	200점	120점	80점																																																																		
전국규모대회	15점	10점	6점																																																																		
구분	1위	2위	3위	비고																																																																	
올림픽게임	1000점	600점	400점																																																																		
세계선수권대회	600점	400점	300점																																																																		
아시안게임	400점	300점	200점																																																																		
아시아선수권대회	300점	200점	120점																																																																		
전국체육대회	200점	120점	80점																																																																		
전국규모대회	15점	10점	6점																																																																		
비고 : 1. 기타 체육대회는 전국규모대회와 동일하게 점수를 산정한다.					비고 : 전국규모대회는 다음과 같다.																																																																
2. 전국규모대회는 다음과 같다.																																																																					
<table><tr><th>구분</th><th>해당 전국규모대회명칭</th></tr><tr><td rowspan="4">육상</td><td>①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td></tr><tr><td>②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td></tr><tr><td>③ 전국실업단대항육상경기대회</td></tr><tr><td>④ 전국실업육상경기선수권대회</td></tr></table>					구분	해당 전국규모대회명칭	육상	①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②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③ 전국실업단대항육상경기대회	④ 전국실업육상경기선수권대회	<table><tr><th>구분</th><th>해당 전국규모대회명칭</th></tr><tr><td rowspan="4">육상</td><td>①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td></tr><tr><td>②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td></tr><tr><td>③ 전국실업단대항육상경기대회</td></tr><tr><td>④ 전국실업육상경기선수권대회</td></tr></table>					구분	해당 전국규모대회명칭	육상	①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②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③ 전국실업단대항육상경기대회	④ 전국실업육상경기선수권대회																																														
구분	해당 전국규모대회명칭																																																																				
육상	①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②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③ 전국실업단대항육상경기대회																																																																				
	④ 전국실업육상경기선수권대회																																																																				
구분	해당 전국규모대회명칭																																																																				
육상	①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②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③ 전국실업단대항육상경기대회																																																																				
	④ 전국실업육상경기선수권대회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10-1536호

대부업자 영업정지 처분 공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 우리 구에 등록 된 대부업자 중 같은법 제 8조(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위반으로 해당 대부업자에 대하여 영업전부정지(6월)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 공고합니다.

2010. 12. 8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공고의 명칭 : 대부업자 영업정지 처분
2. 공고대상 : 1개소

등록번호	등록일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영업장)	처 분 사유
인천 남동구 2010-13	2010.2.12	한마음머니대부	김○○	남동구 만수동946-19 우성빌라 101호	이자율 위 반

3. 공고기간 : 2010.12.8 ~ 2011.06.07
4. 영업정지 일자 : 2010.12.8
5. 처분이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위반 영업전부정지(6개월) 사유에 해당 됨
6. 법적근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7. 행정처분내용 : 대부업자 영업전부정지(6개월)
8. 처분에 대한 불복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지역경제과(☎ 032-453-26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10-1540호

취·등록세 고지서 공시송달

성 명	김현규 외 16명
주소 또는 거소	내역별첨
서 류 의 명 칭	2010년 11월 수시분 취·등록세 고지서
서 류 의 내 용	2010년 11월 수시분 취·등록세 고지서

위 서류를 귀하에서 송달하고자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로 우편발송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미거주”, “이사”, “반송함장기방치” 및 “폐업” 등으로 반송처리 되어 송달이 불능인 바, 지방세법 제5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초 납기 2010.12.1일을 2010.12.14일로 변경하여 공시하오니 납기 내 남동구청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0. 12. 01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취등록세 2010. 11월 부과분 공시송달내역

연번	세목	개인(법인)명	납세자번호	납세번호	공고사유	세액합계
1	취득세	김현규	781123	101001-2010-11-2-510-069453	수령인없음	4,578,220
2	취득세	김현규	781123	101001-2010-11-2-510-069454	수령인없음	1,676,110
3	취득세	원복순	591010	101001-2010-11-2-521-069499	수령인없음	1,394,240
4	취득세	김교만	540416	101001-2010-11-2-522-069251	폐업또는부도	221,420
5	취득세	김선일	590925	101001-2010-11-2-522-069362	폐업또는부도	292,010
6	취득세	장태연	390506	101001-2010-11-2-530-069471	폐업또는부도	2,595,080
7	취득세	연풍판	741007	101001-2010-11-2-530-069497	폐업또는부도	1,653,930
8	취득세	(주)천수인	120111	101001-2010-11-2-550-069443	폐업또는부도	561,520
9	취득세	유근화	770105	101001-2010-11-2-580-069444	폐업또는부도	2,134,930
10	취득세	천승민	750515	101001-2010-11-2-650-069469	폐업또는부도	5,895,370
11	취득세	김순학	600214	101001-2010-11-2-670-069260	폐업또는부도	1,057,400
12	취득세	이경진	860130	101001-2010-11-2-670-069450	폐업또는부도	3,592,930
13	취득세	최종관	671215	101001-2010-11-2-670-069490	폐업또는부도	4,685,320
14	취득세	심금수	640323	101001-2010-11-2-670-069508	폐업또는부도	3,707,680
15	취득세	김옥란	621122	101001-2010-11-2-680-069451	폐업또는부도	1,665,300
16	취득세	이동수	531106	101001-2010-11-2-800-069261	폐업또는부도	1,169,890
17	취득세	삼인기업(주)	120111	101001-2010-11-2-800-069339	폐업또는부도	119,260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10-1541호

향촌구역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 입안을 위한 공람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향촌 주거환경개선지구』(관보 제14336호 '99.10.22)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제2008-77호 '09.01.05)에 의거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고시 된 사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7조,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6조에 의거 향촌구역 주거환경개선계획을 변경 수립하였기에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람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한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2월 02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I. 공고내용

1. 사업의 개요

가. 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지구의 명칭 : 인천 남동구 향촌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0, 109, 110번지 일원
- 면 적 : 203,425㎡

나.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01년 8월 ~ 2011년 12월31일

다. 사업시행자(변경)

- 전면개량지역 : 대한주택공사 사장(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변경)
- 현지개량지역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단, 주택개량은 주민)

2. 주거환경개선계획의 내용

가. 주택개량방식(변경없음)

나.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다. 공동주택건립계획(변경)

1) 건축규모(변경없음)

2) 주택공급건립계획(변경)

구 분		공급별	총 계	114㎡	84㎡	74㎡	59㎡	46㎡	39㎡	비 고
기정	공동주택 (①-1)	소 계	3,208	242	1,489	224	846	407	-	
		임 대	673	-	-	-	266	407	-	
		분 양	2,535	242	1,489	224	580	-	-	
	공동주택 (③-1)	소 계	438	-	328	-	68	-	42	
		임 대	110	-	-	-	68	-	42	
		분 양	328	-	328	-	-	-	-	
	계	합 계	3,646	242	1,817	224	914	407	42	
		임 대	783	-	-	-	334	407	42	
		분 양	2,863	242	1,817	224	580	-	-	
변경	공동주택 (①-1)	소 계	3,208	242	1,489	224	846	407	-	
		임 대	673	-	-	-	266	407	-	
		분 양	2,535	242	1,489	224	580	-	-	
	공동주택 (③-1)	소 계	438	-	328	-	68	-	42	
		임 대	434	-	324	-	68	-	42	
		분 양	4	-	4	-	-	-	-	
	계	합 계	3,646	242	1,817	224	914	407	42	
		임 대	1,107	-	324	-	334	407	42	
		분 양	2,539	242	1,493	224	580	-	-	

- 라. 구역지정 결정(변경없음)
- 마.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없음)
- 바.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 사.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 아.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 자.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차.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변경없음)
 - 1) 경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2) 교통처리계획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3) 대지 내 공지에 대한계획(변경없음)
 - 4)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에 대한 관리처분에 관한계획(변경없음)

II. 관계도서 : 게재생략

III.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7일간

IV. 공람장소 : 남동구 도시개발과 (☎ 032-453-2994)
만수2동 주민센터 (☎ 032-453-5400)
만수3동 주민센터 (☎ 032-453-5420)